

채용 결격 사유

인사규정 (결격사유)

1.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6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0. 『지방공기업법』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1. 비위로 채용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『형법』 제303조 또는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